

제5장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례



제5장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례

▶ 사례18

고등학생인 신청인이 수행평가에서 특혜를 받았으며 다른 학생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서울조정972·973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송○○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닷컴)
중 재 부	서울 제3중재부
접 수 일	2016. 7. 1.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지역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특정 학생에게 수행평가에서 특혜를 줬고, 해당 학생이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수차례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수행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다른 학생들의 동의 하에 진행되어 특혜나 차별이 없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취재 없이 다른 학생들의 진술에만 근거해 보도했다며 정정보도 및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보도의 분량 및 횟수, 내용이 이례적이고, 미성년자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신청인이 특정되어 피해가 인정되나, 피해구제방법으로서 보도문 게재보다 조정대상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권유 하였고, 신청인은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과 함께 향후 보도에 신청인을 특정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신원 특정의 문제를 인정하고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아시아경제닷컴 - 『수행평가 교사 입맛대로 차별 적용’ 대학 입시 비리 논란』 제하의 기사 (2016년 4월 5일자 사회면)

- 내 용

전남 ○○고등학교가 수행평가지험에서 교사의 입맛대로 특정 학생에게 높은 성적을 줘 피해를 봤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제기돼 대학입시 비리 논란에 휘말렸다.

더욱이 이 학교는 지난해 2학기 특기자 선발전에서 8등 S여학생을 특기자로 선정하기 위해 1~2등을 기록한 K, J학생을 1학기 징계사유로 탈락시켜 이중 처벌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번에도 교사의 입맛대로 높은 점수를 받은 당사자는 8등 특기생 S여학생이다.

5일 ○○고 6명의 여학생은 진술서를 통해 “2015년 12월 수행평가 당시 P감독이 내준 과제를 잘 수행했는데도 자신들보다 더 못한 S학생에게 부상투혼이라는 주장으로 점수를 많이 줬다”며 “아이언 평가에서 S학생은 드라이버로, 나머지 학생은 7번 아이언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했다”면서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교육부가 올해 1학기부터 수행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교육부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없이 졸속으로 행정을 추진했다는 비난도 제기될 것으로 보여 교육부의 대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인권침해, 징계조작, 특기생 바뀌치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고등학교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번 수행평가 특혜주장은 징계조작, 특기생 바뀌치기와 연계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도교육청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낼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의 피해주장은 모두가 한 결 같이 동일했다.

2015년 12월 2학기 경기과 16명의 학생이 전체 참가한 가운데 이 학교연습장에서 수행평가가 진행됐다.

P감독이 진행한 아이언 수행평가는 100점 만점에 50점은 기본 점수이고 공 하나에 10점씩 5개를 친다. P감독은 우측 탑과 가운데 철탑사이로 공을 쳐라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지시했다. 거리까지 평가했다.

B학생은 “분명 우측 탑과 가운데 철탑사이의 방향성과 거리까지 본다고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5개 모두 잘 친 저와 C친구는 75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은 이어 “이 때까지 수행평가 점수가 90점 밑으로 내려가 본적이 없었는데 공 5개가

모두 선생님이 내준 과제에 완벽히 들어맞았는데 생각보다 낮은 점수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으로 수행평가를 시작한 S학생이 문제였다. B학생은 “S학생이 손 깍스를 하고 있던 것을 병원에서 풀고 왔다”면서 “연습을 안 해서 그런지 S학생은 사방팔방 방향성이 없는 데다 거리도 짧아 어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었지만 부상투혼이라는 특혜를 받아 80점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수행평가는 누구의 편의를 봐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P감독에게 따져 물었지만 P감독은 ‘자꾸 그러면 태도점수를 깎는다’고 말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P감독이 S학생의 수행평가점수를 더 많이 주기 위해 B양을 압박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B학생은 애초에 우리 학교는 다쳐서 점수를 더 준 사실도 없고 못 치는 사람에게 핸디캡을 준적도 없었다”며 “K프로도 P프로도 비정상적으로 S학생에게 점수를 많이 줬다”고 밝혔다. K프로는 계약직으로 3년 간 근무해왔고 현재는 연장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P프로(P감독 제자)도 수행평가 때 S학생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P프로는 7번 아이언 10개 중 5개가 앞 망에 올라가야 100점이다. 그리고 드라이버는 뒷 망을 맞으면 100점을 준다는 것.

J학생에 따르면 “S학생과 나에게는 초보자라는 이유로 7번 아이언 대신 드라이버를 치게 했다”며 “그래서 1학년 P프로의 과목 수행평가를 잘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특혜를 받았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다.

또한 J학생이 2학년 P감독 과목 수행평가 때 일이다.

P감독은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쳐서 방향과 거리 임팩트를 평가한다고 했다. 그런데 “B학생이 S학생보다 잘 쳤는데 S학생 수행평가 점수가 더 높았다”며 “그 이유는 부상투혼 때문에 태도가 좋아 점수를 더 줬다”고 J학생은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J학생은 “K프로가 진행하는 수행평가 때는 학생들이 서로에게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학생들이 점수를 주면 K프로는 몇 명의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줬고, C프로는 기회를 더 준 학생들도 있었고 가산점을 더 준 학생들도 있어 수행평가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행평가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B학생을 포함, 5명에 이르고 피해

자체를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고 전 감독 A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학생들이 하나 둘 이 같은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 시작했고 그 때부터는 학교의 수행평가 조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수행평가 조작은 대학입시 비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P감독은 “똑같이 학생들 보는 앞에서 점수를 기재했기 때문에 그럴 순 없다”며 “S학생한테 그런(특혜를 준) 적 없다”고 해명했다.

P감독은 이어 “(그 당시)남학생들이 다 봤었기 때문에 남학생들한테 물어보라”며 “개인적으로 특혜를 준 것도 없는데 그 때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하고 이제 와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P감독은 또 “태도점수 깎아 버린다.’는 말은 한 적도 없다”면서 “없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왜 여학생들 말만 듣고 ... 남학생들도 같이 봤는데 남학생들한테도 들어보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피해를 주장한 학생하고 대질해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 달라”며 “절대 한 적이 없고 공평하게 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보도 2

■ 아시아경제닷컴 - 『학교 기숙사서 2년 간 학교폭력 발생 드러나 ‘충격’』 제하의 기사

(2016년 5월 25일자 사회면) 외 9건

■ 내 용

전남 ○○고등학교 내 기숙사에서 2년여 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전남도교육감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K학생과 J학생은 “S학생(현 학생회장)은 같은 반 한 학생을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며 “이 사실은 골프감독이자 기숙사 사감인 P감독이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는 피해학생을 보호조차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는 기숙사 같은 방을 배정해 줬다”고 말했다.

학교의 이 같은 조치로 피해학생은 S학생회장에게 2년여 간 괴롭힘을 당해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지난 3월 31일 학교에서 가해자 S학생회장과 학부모,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만나 원만한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S학생회장은 이 피해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해 피해학생이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학생들은 “이 문제도 학교 측은 사실을 인지했으나 증거가 없어 학폭위를 개최할 수 없다는 변명을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 서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하더라도 학폭위는 개최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 학교 측은 피·가해자 간 합의가 있었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해 학교 사안으로 종결했다.

이 같은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은 최근 사감교사를 맡았던 P감독에게 이 같은 사실을 물어 봤지만 P감독은 “그런 피해사실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학교장은 “피해학생을 면담했더니 “어렵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P감독에게 했었던 것 같다”며 “괴롭힘을 당하거나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학교장은 이어 “P감독과 면담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 일이고 해서 그냥 지나쳤던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듯 보였다.

이에 대해 피해학부모는 “P감독에게 피해사실을 분명히 알렸었다”며 “그러나 이 같은 피해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아시아경제(<http://www.asiae.co.kr/>)의 홈페이지 뉴스면의 초기화면에 <별지>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통상의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의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 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1>

- 가. 제목 : 「“수행평가 교사 입맛대로 차별 적용” 대학입시 비리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4월 5일자 사회면에 「“수행평가 교사 입맛대로 차별 적용” 대학입시 비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5일 ○○고 6명의 여학생은 진술서를 통해 “2015년 12월

수행평가 당시 P감독이 내준 과제를 잘 수행했는데도 자신들보다 더 못한 S학생에게 부상 투혼이라는 주장으로 점수를 많이 줬다”며 “아이언 평가에서 S학생은 드라이버로, 나머지 학생은 7번 아이언으로 수행평가를 진행했다”면서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전라남도 교육청의 전수조사 끝에 기사에서 언급된 2015년 12월경 수행평가에서 ‘S학생’에게 다른 학생에 비하여 부당하게 점수를 많이 준 사실이 없고 올바르게 채점하였으며, 2014년 6월경 ‘아이언 평가’에서는 ‘S학생’ 외에 추가로 2명의 학생까지도 다른 모든 학생의 동의를 얻어 드라이버채로 수행평가를 진행하였는 바, 각 수행평가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2〉

가. 제목 : 「학교 기숙사서 2년 간 학교폭력 발생 드러나 “충격”」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5월 25일자 사회면에 「“수행평가 교사 입맛대로 차별 적용” 대학입시 비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23일 전남도교육감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K학생과 J학생은 “S학생(현 학생회장)은 같은 반 한 학생을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며 “이 사실은 골프감독이자 기숙사 사감인 P감독이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는 이 피해학생을 보호조차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는 기숙사 같은 방을 배정해 줬다”고 말했다. 학교의 이 같은 조치로 피해학생은 S학생회장에게 2년여 간 괴롭힘을 당해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지난 3월31일 학교에서 가해자 S학생회장과 학부모,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만나 원만한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S학생회장은 이 피해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해 피해학생이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기사에서 ‘S학생’으로 표기된 학생이 같은 반 학생인 피해학생을 2년여 간 괴롭힌 사실이 없고, ‘S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이 원만한 합의를 한 이후에 ‘S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3〉

가. 제목 : 「[아버지의 눈물②]학교폭력 피해 숨기고 가슴앓이 해 온 피해 학생의 사연」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20일자 사회면에 「[아버지의 눈물②]학교폭력 피해 숨기고 가슴앓이 해 온 피해 학생의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학교폭력 피해를 숨기고 2년여 간 가슴앓이 해 온 피해 학생이 기숙사에서 강요에 못이겨 온갖 잡일을 해오며 피해를 봐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가해학생 B는 피해학생 A와 은행에 가는 도중 “C학생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만약에 C학생과 말하면 “기숙사 방문을 잠근다고 협박했다”는 것. B학생과 C학생은 서로 다툼 뒤였다. A학생은 다른 친구에게 이 같은 말을 전했다. B학생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A학생 앞에서 핸드폰을 바닥으로 던지면서 “XXX이 진짜”라며 욕을 했다. (-중략-) 또한 B학생은 A학생이 집에 가는 날 학교버스 자리를 무조건 앞쪽으로 맡아 달라고 했다. A학생은 앞쪽 자리는 이미 친구들이 앉아 있어 중간 쪽 자리를 잡았으나 B학생은 “앞에 자리가 있는데 “왜? 여기에 앉아 있어 XXX아”라고 욕했다. 특히 B학생은 기숙사 방을 같이 사용할 당시 주로 방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 라면 끓이기 등 모든 일들을 시켰다. B학생은 A학생이 보이지 않으면 기숙사를 돌아다니며 찾아 나섰고 방으로 데려와 온갖 잡일을 시켜댔다. 하루는 몸이 너무 많이 아파 치료를 받느라 일요일에 기숙사 입실을 못했던 때도 있었다. 치료를 받고 며칠 뒤 기숙사에 갔을 때도 평소와 같이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B학생은 A학생을 보자마자 빨래하라고 시켰다. (-중략-) 청소시간이라는 방송이 나오면 B학생은 A학생을 소리쳐 부르며 찾아다녔고 A학생을 데려가 청소를 시켰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해당 기사에서 ‘B학생’으로 표기된 학생이 ‘A학생’으로 표기된 학생에게 2년여 간 욕을 하거나 폭행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4〉

가. 제목 : 「[아버지의 눈물④]학부모에게 동의서 ‘중용’ … 학교 규정도 ‘손봐’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20일자 사회면에 「[아버지의 눈물④]학부모에게 동의서 ‘중용’ … 학교 규정도 ‘손봐’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나 최근 B학생이 A학생을 괴롭히고 욕설을 해왔던 사실과 B학생의 음주, 흡연, 휴대폰 소지 및 사용 등의 사실을 들어 학부모의 학교폭력위원회 개최가 잇따라 요구됐고 본보가 이에 대한 취재를 시작하자 학교 측이 B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B학생은 친구들과 사이에서 체험학습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잦았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 학교의 경우 2학기 동안 체험학습은 7일로 알려져 있으며, ○○고는 19일이었다. 그런데 이를 두 배로

늘린 것이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확인한 결과, 해당 기사에서 ‘B학생’으로 표기된 학생이 흡연한 사실은 없고, ‘B학생’의 체험학습이 다른 학생들보다 갖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6. 9. 2.(금) 18:00까지 아래의 기사들을 전부 삭제하고,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삭제 대상 기사

- 1) <아시아경제닷컴> 2016. 4. 5.자, 뉴스)사회면, 「“수행평가 교사 입맛대로 차별 적용” 대학입시 비리 논란」 제하의 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0510020705755>

- 2) <아시아경제닷컴> 2016. 5. 17.자, 뉴스)사회면, 「상습적으로 학우 괴롭힌 학생회장에게 ‘교육감 표창’이라니」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1718180781808>

- 3) <아시아경제닷컴> 2016. 5. 25.자, 뉴스)사회면, 「수행평가 특혜’ 주장했더니 성적이 올랐어요」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2417135122145>

- 4) <아시아경제닷컴> 2016. 5. 25.자, 뉴스)사회면, 「학교 기숙사서 2년 간 학교폭력 발생 드러나 ‘충격’」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2509380345736>

- 5) <아시아경제닷컴> 2016. 5. 26.자, 뉴스)사회면, 「전남도교육청 “○○고에 학폭위원회 개최” 명령」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2615105679951>

- 6) <아시아경제닷컴> 2016. 6. 20.자, 뉴스>사회면, 「[아버지의 눈물①]무조건 이해하고
인내하라...“딸에게 미안하다” 눈물」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011105681710>
- 7) <아시아경제닷컴> 2016. 6. 20.자, 뉴스>사회면, 「[아버지의 눈물②]학교폭력 피해
숨기고 가슴앓이 해 온 피해 학생의 사연」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011103576761>
- 8) <아시아경제닷컴> 2016. 6. 20.자, 뉴스>사회면, 「[아버지의 눈물③]○○고, 학교폭력
수수방관 ... 전남교육청은 ‘뒷집」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011101563853>
- 9) <아시아경제닷컴> 2016. 6. 20.자, 뉴스>사회면, 「[아버지의 눈물④]학부모에게 동의서
‘종용’ ... 학교 규정도 ‘손봐」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010445108840>
- 10) <아시아경제닷컴> 2016. 6. 22.자, 뉴스>사회면, 「“학교폭력 방치에 절규하는 부모의
‘한’ 풀어주세요”」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62215215294048>
- 11) <아시아경제닷컴> 2016. 7. 6.자, 뉴스>사회면, 「학교폭력은 통상적인 것 ... ‘죄는
있어도 처벌 없다?」 제하의 기사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70610022359432>
2. 피신청인은 향후 유사한 보도를 하더라도 신청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청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8. 2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조정대상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사례19

신청인이 지하철에 앉아 출근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서울조정1254 손배청구
신 청 인	장 ○
피 신 청 인	네이버 주식회사 (네이버)
중 재 부	서울 제2중재부
접 수 일	2016. 9. 2.
처 리 결 과	취하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서울 지하철 9호선에 셔틀형 급행열차가 투입된 첫날의 상황을 보도한 조정대상기사를 포털사이트에 매개하였고, 기사제공언론사는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 및 객차 내부에 앉아있는 승객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게재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진 촬영 및 보도에 동의한 적이 없고, 조정대상기사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많이 본 기사로 뜨면서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신청인을 비난하는 모욕적인 댓글이 수 백개 달려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은 내규에 따라 일부 댓글은 자체 조치를 취했고, 그 외 댓글에 대해서는 신청인 요청에 따라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후 신청인이 명예 훼손적인 댓글을 특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전달하기로 정하였다. 중재부는 삭제 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임시조치 기간(30일) 이후로 심리를 속행할 것을 결정하였고, 신청인이 요청한 댓글들 중 임시조치 후 게시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종국적으로 노출 및 검색차단 조치되었으며, 이를 확인한 신청인이 2차 기일 전에 사건을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네이버 - 『“앉아서 출근하다니” ... ‘천국鐵’된 9호선』 제하의 기사
(2016년 8월 31일자 뉴스면)

■ 내 용



× “앉아서 출근하... :: 네이버 뉴스
m.news.naver.com

사진 가운데 정장입고 찍벌. 저런것들이 사라져야 더 쾌적한 지하철이된다.
2시간 전 신고

답글 156 3038 274

L [redacted]
남자가 봐도 너무하다 옆사람이 찍벌남때문에 움츠리잖아...
2시간 전 신고

L [redacted]
대박 일부러 옆에 여자들하고 밀착하려고 벌린듯 진짜 극혐
2시간 전 신고

L [redacted]
얼마벌린거같지도않구만..
2시간 전 신고

L [redacted]
진짜 개극혐 개공감 ㅋㅋㅋ
2시간 전 신고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취하

취하 후 이행결과

모욕성 댓글 임시조치 후 검색 및 노출 차단

▶ 사례20

탈북여성 중매업체에 근무하는 신청인의 사진 및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서울조정1108 손해청구
신 청 인	최○○
피 신 청 인	한국방송공사 (KBS-1TV)
중 재 부	서울 제3중재부
접 수 일	2016. 8. 3.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이 탈북여성 중매업체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는 신청인과 교제했던 남성의 인터뷰를 게재했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사진과 사적인 남녀 관계가 동의 없이 공개됐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방송 보도에 동의한 바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확인도 없이 제보자의 의견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해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현재 해당 업체로부터 권고 사직을 당하였다며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근무했던 결혼정보업체에 사실조회를 통해 조정대상보도 이후 회사 이미지 실추 및 회원들의 항의로 사직을 권고한 점을 확인하였고, 신청인의 피해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사진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하고,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KBS-1TV -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남남북녀는 없다, 탈북여성 중매업체』 제하의 보도 (2016년 7월 22일자)

내 용

- ▷ 김창희(가명) : 네 번째 만날 때 (여자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남북결혼 중개업체에서 일한다. 다른 회사 커플매니저한테 요청이 온대요. (자기업체 남성회원을) 만나달라고요. 그것은 남자회원의 만남횟수가 빨리 지나가야 하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3번이건 6번이건 남자회원의 만남 횟수가 빨리 지나야 한 회원의 계약이 끝나고 다른 회원이 들어오니까 횟수 없애려고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진 공개)

저를 만나면서도 다른 남자회원을 만나더라고요. 제가 ‘만나지마라’ 이야기했죠. 내가 있으니까 이런 일(남자 만나는 일)은 하지 말라고 (여자도) 제가 그런 걸 싫어하니까 안 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는 하는데 끝까지 회사를 다녔고 저한테는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 ▷ M C : 그 여인은 왜 김 씨와의 교제 중에도 다른 남성과의 맞선 자리에 나갔을까.
- ▷ 취재진 : 혹시 ○○○ 매니저님 계시나요? ○○○씨요.
- ▷ 결혼중개업체 대표 : 솔직히 그 여성분은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 아름다운 만남을 했으면 아름답게 끝나는 게 인간이 아니겠냐.
- ▷ 결혼중개업체 직원 : 아니 근데 회사 직원들도 다 미혼인데 괜찮은 분 있으면 만날 수 있는 거고 그게 왜 이렇게 찾아오실 정도로 문제가 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 ▷ M C : 취재결과 관계 업체 직원끼리 서로 돌아가며 맞선자리를 채워나가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보도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은 2016년 9월 9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홈페이지의 다시보기(VOD) 서비스 및 피신청인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신청인 부분을 모두 삭제하도록 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2016년 9월 12일까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및 종합유선방송(CATV)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VOD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각 방송사업자에게도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VOD 서비스에서 신청인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인 관련 조정대상보도가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9. 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KBS미디어 - 다시보기(VOD) 서비스에서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하여 수정
-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 사례21

신청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흥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음식점 내부가 노출돼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6서울조정8, 2016서울조정9(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임○○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채널A, 인터넷 채널A)
중 재 부	서울 제6중재부
접 수 일	2016. 1. 7.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흥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음식점의 CCTV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사건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제공하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입구가 그대로 노출되어 매출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CCTV 영상을 선의로 제공하면서 음식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미흡하여 주변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피신청인이 유감표명과 함께 조정대상보도 노출 및 검색 차단을 수용한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액 2,000,000원을 권유하였으며,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채널A - 굿모닝A 프로그램 『술 마시다 흥기 난동 ... 2명 부상』 제하의 각 기사 (2015년 10월 26일자 사회면, 인터넷 채널A 10월 26일자 뉴스면)
- 내 용
 - ▷ 진행자 : 어제 저녁 서울 도봉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흥기를 휘둘러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범인은 도주했지만 곧 경찰에 붙잡혔고, 흉기에 찔린 남성들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 ▷ 기 자 : 밤 늦은 시각, 길거리에서 마주보고 선 두 남성.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 한 명이 옷을 벗는가 싶더니 갑자기 복부를 움켜쥐고 쓰러집니다. 마주보고 있던 A씨가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 인근 상인 : “둘 다 술에 취했었나봐. ‘그래 찔러봐, 찔러봐’ 하니까 진짜로 찔렸대”
- ▷ 기 자 : 그런데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이 쓰러진 사이 피해 남성의 일행인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 ▷ 인근 상인 : “흉기로 그 사람이 찌르고 도망을 갔는데, 한 사람이 흉기에 찔려서 (복부를) 쥐고 잡으러 갔고”
- ▷ 기 자 :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당한 두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뒤 돌아났던 A씨도 사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6년 2월 12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2016년 2월 5일 10:00까지 채널A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channela.com/>)에 게시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동영상을 삭제하고,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4. 피신청인은 2016년 2월 12일 10:00까지 피신청인 대리인 임○○ 차장 명의로,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의 문서를 신청인 또는 신청인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3항 또는 제4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위 각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6.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보도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2. 3.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조정대상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 피신청인 유감표명

▶ 사례22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의 옹벽 디자인이 표절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6부산조정1·2, 2016부산조정3·4(병합) 각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국제신문사 (국제신문, 인터넷 국제신문)
중 재 부	부산중재부
접 수 일	2016. 1. 12.
처 리 결 과	각 취하 (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논란이 있다고 보도 하면서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디자인과 모 중학교 담장 공모에 제출된 디자인 도안을 각각 게재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의 모 중학교 담장 공모 디자인은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공모에 제출한 신청인의 주간 시뮬레이션 도안으로서, 결국 보도의 도안은 신청인이 제출한 주간 및 야간 시뮬레이션으로 동일한 것임에도, 마치 다른 업체가 다른 공모에 제출했던 도안인 것처럼 비교함으로써 신청인이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오인하도록 보도하였다며 정정 및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이에 피신청인이 사진을 잘못 게재한 점을 인정하고, 심리 전 조정대상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후 신청인이 이 사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국제신문 - 『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디자인 표절 논란에 표류』 제하의 각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사회면, 인터넷 국제신문 9월 15일자 사회면)

■ 내 용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디자인(위)과 경북 모 중학교 담장 공모에 제출된 디자인.

부산 부산진구가 추진하는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사업이 ‘저작권 논란’으로 표류하고 있다. 부산진구는 최근 사업을 맡았던 업체에서 사업 포기 의향을 밝혔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표명했지만, 앞으로 관 주도 사업에서 표절 등 잡음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의 한 설계업체 A사는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디자인 사업을 따낸 B사를 검찰에 형사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사의 주장에 따르면 B사가 지난 5월 부산진구의 공무를 통해 따낸 시립도서관 옹벽 디자인은 A사가 2012년 경북의 한 중·고등학교 담장 디자인 사업에 공모했던 디자인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회사의 디자인을 본 사람들은 표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DNA 구조를 형상화해 원이 휘감겨 있는 타일의 형태와 ‘예술적 가치’, ‘환경 친화력’ 등의 문구 등 B사의 옹벽 디자인은 A사가 2012년 제작한 디자인과 유사점이 많다.

A사 관계자는 “누구나 한 눈에 알 수 있는 ‘표절’이라며 “남의 디자인으로 공모에 참여하면서 B사는 일체의 합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두 회사의 작품을 본 디자인 전문가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아 딱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표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B사는 원래 A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퇴하 이후 만든 회사로 알려졌다.

부산진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절 논란이 불거진 작품은 공모에 함께 나온 작품도 아니고, 다른 공모에서 선정된 작품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5명 내외의 심사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의 공모를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표절 여부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사업은 애초 예상했던 9월 내 완공이 불가능하게 됐다. 새로운 업체에 공사 발주를 넣는다고 해도, 완공에는 120일 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된 타일을 이용해 공사하는 데만 한 달이 넘을 것으로 부산진구는 추정하고 있다. 사업이 올해 안에 진행되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받은 사업비 3억 3000만 원은 시로 환수당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올해 안에 발주를 넣으면 사업비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국제신문 사회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부산진구 새 업체에 연내 발주 제도적 검증장치 마련 지적”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국제신문(<http://www.kookje.co.kr/>)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가. 제목 : ‘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디자인 표절 논란에 표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신문 9월 15일자 10면 [시립도서관 옹벽 리모델링 디자인 표절논란에 표류]란 제목의 기사와 함께 게재된 기사의 사진(위, 아래)은 진구청에 응모한 B사의 주간, 야간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립도서관 옹벽 디자인(위)과 경북 모 중학교 담장 공모에 제출된 디자인’이라고 사진 설명을 달아 누가 봐도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내용으로 인식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A사 관계자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다소 독자로부터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취하

취하 후 이행결과

조정대상기사 노출 및 검색 차단